

# 임원복무규정

## 임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임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문책”을 각각 “징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문책”을 “징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로 하며, 정직 및 해임은 중징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문책”을 “징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결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징계는 당해 임기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⑥ 임원이 그 임기 중 경징계 3회 또는 정직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며, 정직을 3회 받은 경우에는 그 신분을 해제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문책”을 각각 “징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 중 “문책”을 각각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 또는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임원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2. 복종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3. 직장이탈금지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5. 비밀엄수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6. 청렴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7. 품위유지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9. 정치운동금지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10. 집단행위금지위반	<u>해</u> <u>임</u>	<u>정</u> <u>직</u>	<u>감</u> <u>봉</u>	<u>견</u> <u>책</u>

[별표 2]

## 채용 비위 자징계 기준

### □ 채용

비위유형 \ 구분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sup>1)</sup>	경과실 주의·경고	고의·중과실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주의·경고	고의·중과실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sup>2)</sup>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sup>3)</sup>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비위유형 \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sup>4)</sup>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 정규직 전환

비위유형 \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sup>5)</sup>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 <sup>6)</sup> 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 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6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u></p> <p>1.~2. (생략)</p>	<p><u>제16조(징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u>제17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u></p>	<p><u>제1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로 하며, 정직 및 해임은 중징계로 한다.</u></p>
<p><u>제18조(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이 경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u></p> <p><u>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경고를 받은 때에는 봉급의 10분의 3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u></p>	<p><u>제18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결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u></p> <p><u>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액한다.</u></p>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  
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  
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당해 임기만으로 효  
력을 상실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면권자가 행하  
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  
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  
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  
지 아니한다.

④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  
하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  
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  
여 지급한다.

⑤ 징계는 당해 임기만으로 효  
력을 상실한다.

⑥ 임원이 그 임기 중 경징계  
3회 또는 정직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며,  
정직을 3회 받은 경우에는 그  
신분을 해제한다.

제19조(징계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임면권자가 행하  
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문책양정기준) ① 임원의 문책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사회가 문책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문책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및 문책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기준) ① 임원의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와 같다.

② 이사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 표]

## 임원문책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해 입	해입, 경고	경 고	주 의
	해 입	경 고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입	경 고	주 의	주 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 입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해 입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입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9. 정치운동금지위반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10. 집단행위금지위반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11. 채용비리와 관련 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 입	해 입	경 고	주 의

(개 정 안)

[별표 1]

임원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금지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	해 입	정 직	감 봉	견 책